

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현찬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1일

발 의 자 : 이현찬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유 용, 이광호, 김상진,
한기영, 이병도, 봉양순,
경만선, 박상구, 강동길,
김호평, 김경우, 이동현,
김제리, 송재혁 의원(14명)

1. 제안이유

- 가족자연체험시설에 대한 설치·관리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·공개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인명·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, 이용자에게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이용자의 의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나. 가족자연체험시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함(안 제7조제2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연체험 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4조 중 “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은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제목인 “이용자의 손해배상”은 “이용자의 의무”로 하며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의2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 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자연체 험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 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 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4조(사용료의 감면) <u>시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7조(이용자의 손해배상) <u>이용자가 시설물 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이용자의 의무) ① 이용자가 시설물 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 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.</p>